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78

발의연월일: 2022. 11. 25.

발 의 자:정희용·구자근·김영식

김형동 · 김희곤 · 박덕흠

양금희 • 이명수 • 이양수

이채익 · 최춘식 · 홍문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는 방역시설로서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실의 경우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서 방역복을 착용하고 신발을 소독하기 위한 공간이므로, 방역시설과는 구별되는 소독설비를 갖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이에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을 "울타리·담장 등 방역시설 및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 실(前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3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	
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방역복 착용</u>	<u>울타리·담</u>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	장 등 방역시설 및 방역복 착
<u>담장 등 방역시설</u> 을 갖추고 연	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1회 이상 방역교육을 이수하여	
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